

숙박 약관

제1조 (적용범위)

- 당 호텔이 투숙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계약의 신청)

- 본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숙박자명
 - 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각
 -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른다.)
 -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투숙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계속 숙박을 신청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제한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숙박기간(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저회 호텔에서 지정하는 날짜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신청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호텔이 지정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이 당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요금을 제시하고 해당 숙박요금에 따라 숙박계약을 신청받아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에는 해당 요금이 그 전후의 기일의 숙박요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할 때에는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의 저렴하다는 이유의 표시가 없는 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숙박계약은 무효로 하고 신속하게 그 취지의 통지를 드립니다.

제4조 (신청금의 지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의 지급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 거부)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전염병 혹은 감염증(노로바이러스 외)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
- 당 호텔 또는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또는 이전에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다음과 같은 과도한 요구 행위가 요구되었을 때.
 - 본 호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 법령 및 공사양속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후 할인 요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객실 업그레이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식사 등의 제공
 - 기타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
- 천재지변, 시설고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숙박하고자 하는 것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민폐를 끼치는 발언을 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조) 제2조제6호의 폭력단원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단체의 관계자 또는 그 밖에 반사회적 세력의 관계자로 인정되는 때.
- SNS나 게시판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해당 호텔 종업원, 다른 투숙객에 대한 비방 중상 등 악의적인 글을 올린 경우

제6조 (숙박객의 계약해지권)

- 투숙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투숙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때를 제외합니다.) 은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24:00(미리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더라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해지권)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2. 투숙객이 전염병 혹은 감염증(노로바이러스 외)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
 3. 당 호텔 또는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 또한 이전에 같은 행위가 있었을 때도 포함합니다.
 - (1)본 호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 (2)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
 - (3)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후 할인 요구
 - (4)정당한 사유가 없는 객실 업그레이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식사 등의 제공
 - (5)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 협박, 공갈, 사기행위가 있을 때
 - (6)SNS나 게시판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호텔 종업원에 대한 비방 중상 등 악의적인 글을 올렸을 때
 - (7)위압적인 부담요구를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또는 이전에 동일한 행위를 과거에 당 호텔 또는 주식회사 7garden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기 (1)에서 (7)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
 4.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
 5. 숙박하고자 하는 쪽이 만취 등에 의하여 다른 숙박자에게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준다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조) 제2조 제6호의 폭력단원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단체의 관계자로 인정되는 때.
 7. 침실에서 침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밖에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8. SNS나 게시판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해당 호텔 종업원, 다른 투숙객에 대한 비방 중상 등 악의적인 글을 올린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의 등록)

1.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저희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1) 투숙객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간
 - (4)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여권의 제시 및 사본 등을 제공합니다.
3.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하고 당 호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9 조 (객실 사용시간)

1. 투숙객이 해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도착일 15:00부터 출발일 10:00까지로 합니다.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요금은 객실 타입, 연장 시간에 따라 상이하오니 컨시어지 데스크 영업시간 내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예약 확정 시 숙박 인원을 초과한 객실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원 초과가 발견될 경우 즉시 퇴실해야 하며, 호텔 규정에 따라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호텔 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벌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4. 호텔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하지 않은 외래객의 객실 입실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외래객의 입실이 발각될 경우 즉시 퇴실하고 즉시 퇴실해야 하며, 호텔 규정에 따른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벌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5. 객실 유형 : Mei PENTHOUSE에서는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약하지 않은 외국인의 객실 입실 및 투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인의 객실 투숙 가능 시간은 15:00부터 21:00까지이며, 최대 투숙 가능 인원은 예약된 계약자를 포함하여 6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한, 외래객 1명당 5,000엔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6. 레이트 체크아웃은 12:00까지입니다. 예약 상황에 따라 최대 14:00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4:00까지의 연장 투숙은 1시간당 1,000엔이 부과됩니다, 1시간당 1,000엔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1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박분의 당일 숙박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규칙은 객실에 비치된 카드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 서비스 디렉터리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컨시어지 데스크는 6시부터 다음 24:00까지 영업합니다.레이트 체크아웃 등의 옵션 이용에 관해서는 15:00부터 24:00 사이에 컨시어지 데스크로 직접 의뢰해 주세요.단,
3.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 2.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정부가 정하는 지정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숙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한 때 프론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3.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투숙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1. 본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또는 이를 불이행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귀착되어야 하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는 때의 취급)

- 1. 본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른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본 호텔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 1. 현금,귀중품,미술품,골동품,훼손물,액체물,생물등의 물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 2.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투숙객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 호텔은 5만엔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 3. 투숙객이 본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4. 투숙객이 프론트에 맡긴 짐의 흠집, 움푹 들어간 부분은 보관시점에 매번 흠집, 움푹 들어간 부분 등의 현상 파악이 불가하오니 보증대상에서 제외 및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16 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양해한 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론트에 두고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고 온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 (1) 현금 및 귀중품 :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본 호텔에서 보관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2) 신선 식료품류 : 가격이나 소비 기한 등에 관계없이 발견일에 당일 처분합니다.
 - (3)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 사용이 끝난 속옷, 수건 등의 직물, 오염된 물건 또는 부서진 물건 등: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겠습니다.
 - (4) 기타 물건 : 발견일 포함 3개월간 본 호텔에서 보관 후 처분합니다.
 - 3. 전2항의 경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4. 당 호텔은 두고 온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기 위해 그 내용물을 임의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전항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투숙객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짐 보관 서비스는 체크인 당일 6:00부터 체크아웃 당일 21:00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체크아웃 당일 21:00 이후에도 짐 보관을 원하시는 경우, 짐 1개당 1일 2,000엔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체크인 전에 짐을 호텔로 보내실 경우, 체크인 당일 프런트 데스크 영업시간 내에 짐의 도착 일시를 지정해 주시고, 배송료 전액을 지불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예약 대표자 이름과 숙박 날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인 날짜 이전에 짐을 맡기실 경우, 사전에 프런트 데스크에 신고해 주셔야 하며, 짐 1개당 1일 2,000엔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없이 짐을 보내신 경우, 착불로 보내신 경우, 발송인의 이름으로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짐의 수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17 조 (주차책임)

저희 호텔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인근 주차장 등의 이용에 있어서 분쟁 트러블 등에 대해서는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 조 (숙박객의 책임)

- 1.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시오.투숙객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별표 제3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본 호텔시설 내(지정흡연장소 제외)는 모두 금연을 위해 객실 내 혹은 시설 내에서 흡연행위 또는 흡연흔적(냄새만 포함한다)을 발견한 경우 사유 여하에 관계없이 객실 세탁비 및 객실 판매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산정방법은 별표 제3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계약인원 초과 객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신청 없이 계약인원을 초과한 이용이 발각되었을 경우 즉시 퇴거 후 당 호텔에서 정하는 벌칙금을 받습니다.벌칙금 산정방법은 별표 제4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지배하는 국어)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나, 일본어와 영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모두 일본어에 의합니다.

제20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에 의한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오로지 본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법원에서 일본 법령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역, 명세.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기본 숙박료[실료]
	추가요금	기타 이용요금
	세금	소비세 등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제세

비고 :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제2항 관계)

계약 신청 인원 \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일	2~3일	4~7일
일반	14명까지	100%	100%	100%	50%	20%
단체	15명~126명까지	100%	100%	100%	80%	50%

- (주)1.%는 기본숙박료 대비 위약금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손님(15인 이상)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해지가 있는 경우, 숙박 7일 전(그 날부터 후에 신청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에 숙박 인원의 50%(단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절상)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別表第 3 クリーニング代(第 18 条第 1 項及び第 2 項関係)

별표 제3클리닝비(제18조제1항 및 제2항관계)	객실당 2만엔
음식, 구토, 혈액, 체액, 오물 등으로 인해 호텔의 정상 이용을 초과하는 특별 청소 또는 수선을 요하는 경우(*1)	객실당 2만엔
클리닝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객실 판매 금지의 손해 배상	객실 판매 중지 일수 × 3만엔

- (주) 객실 판매중지 일수는 본 호텔의 판단에 따라 실제 판매를 보류한 일수로 합니다.단, 상한을 10일분으로 합니다.
(*1) 원인이 컨디션 불량으로 인한 오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제4 예약인원 초과 이용 시 범칙금(제18조제3항 관계)

전용면적이 15.0m2 미만인 객실	회당 5만엔
전용면적이 15.0m2 이상 60.0m2 미만인 객실	회당 10만엔
전용면적이 60.0m2 이상인 객실	회당 10만엔